

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전문위원 손자용

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문화재보호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- 조례의 각 조문 중 어려운 용어, 일본식 한자어 등을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수(數) 확대(안 제5조, 제8조)
 - 문화재위원: 25명 → 30명
 - 전문위원: 20명 → 30명

-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시책수립 및 시행규정마련(안 제19조)
- 충청북도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 21조부터 제23조까지)
-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 38조)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
 -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,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축소함(안 제49조)

4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문화재보호법」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, 충청북도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하여 명시하고, 문화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재보호·육성·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보완하였음.

- 또한, 도지정문화재에 한하여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300미터 이내에서 20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문화재보호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